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. 7. 13 선고 2021가단153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변 론 종 결 2022. 6. 22.

판 결 선 고 2022. 7. 13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3. 12. 11. 접수 제257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1/5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21. 5. 4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G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18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3. 12. 11. 채무자 G, 채권최고액 2,000만 원, 근저당권자 H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H은 2005. 8. 23. 사망하였고, 피고들이 각 1/5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.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앞서 본 것과 같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3. 12. 11. 마쳐졌고, 그때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,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.

3.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들은 먼저 채무자만이 시효이익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양도를 받은 제3취득자는 당해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(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5다12446 판결 참조),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나. 다음으로 피고들은 채무자인 H이 채무를 승인하였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민철

별 지 목 록

1동건물의표시

충청남도 예산군

도로명주소

충청남도 예산군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

구 조 벽돌조

면 적 3층 호 49.94평방미터

대지권의표시 토지의표시

충청남도 예산군 대 182평방미터

대지권의종류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182분의 31

이 상

